

DMC SK VIEW IPARK Foret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0.08.0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건본주택 운영 안내

- DMC SK VIEW IPARK Foret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본주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관리를 사이버건본주택(http://www.dmc-skviewipark.co.kr)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청약 접수 이후 청약자를 대상으로 방문 예약을 통해 건본주택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방문일 및 예약 안내 홈페이지 공지 예정, 예약일시 이외에는 방문 불가)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건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인원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건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2-309-1464를 실시 할 예정이오니,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시행사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68, 3층	110-82-16479
시공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101-81-34928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아이파크몰 8, 9층	334-86-00815

2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 고
건축	☎ 에이프라스씨엘 건축사사무소	4,459,462,700	
소방, 통신	☎ 자람앤수앤지니어링	533,500,000	
전기	☎ 이지건축	785,814,000	

3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2년 미만/인천시/경기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5일간)	계약체결(4일간)
일정	2020년 08월 18일(화)	2020년 08월 19일(수)	2020년 08월 20일(목)	2020년 08월 21일(금)	2020년 08월 27일(목)	2020년 08월 31일(월) ~ 2020년 09월 04일(금)	2020년 09월 08일(화) ~ 2020년 09월 11일(금)
방법 및 시간	인터넷청약 (08:00~17:30)				개별조치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10:00 ~ 16:00 ※ 구비서류 지참 방문 ※ 접수 접수간수의 과밀로 인해 접수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6:00
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당사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8길 19-4 일대		

4 공급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은평구 도시계획과 - 1073호(2020.07.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0가길 9(수색동 341-6번지) 일원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5층, 지상 19층 21개동 총 1,464세대 중 일반공급 1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총 73세대(일반(7)관주천) 특별공급 1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7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공급대상 및 면적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면적(지하 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자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7)관주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주택	2020-000899	1	39.9700	39	39.9700	18,5720	58,5420	40,4440	98,9860	23,1809	69	7	7	12	2	28	41	6
		2	49.9200	49	49.9200	23,7590	73,6790	50,5120	124,1910	29,0835	51	5	5	10	2	22	29	4
		3	53.9500	53	53.9500	23,8130	77,7630	54,5900	132,3530	30,9949	16	2	2	3		7	9	1
		4	59.9600A	59A	59.9600	21,0000	80,9600	60,6710	141,6310	33,1677	3			1		1	2	3
		5	59.9700B	59B	59.9700	21,4900	81,4600	60,6810	142,1410	33,2871	4			1		1	3	1
		6	76.6500	76	76.6500	23,8890	100,5390	77,5590	178,0980	41,7076	9	1	1	2		4	5	6
		7	84.9500A	84A	84.9500	24,5680	109,5180	85,9550	195,4730	45,7766	18	2	2	4	1	9	9	18
		8	84.9400B	84B	84.9400	26,2080	111,1480	85,9460	197,0940	46,1562	4			1		1	3	4
		9	102.7400	102	102.7400	24,4280	127,1680	103,9580	231,1260	54,1259	4						4	4
		10	120.0400	120	120.0400	29,8370	149,8770	121,4630	271,3400	63,5434	5						5	2
		합 계									183	17	17	34	5	73	110	49

5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공급금액

전용면적	세대수	분양가	
		최저	최고
39	69	317,300,000	360,600,000
49	51	400,400,000	455,000,000
53	16	419,200,000	476,400,000
59A	3	486,700,000	486,700,000
59B	4	473,700,000	520,600,000
76	9	598,200,000	617,900,000
84A	18	657,800,000	657,800,000
84B	4	661,700,000	684,300,000
102	4	741,100,000	791,600,000
120	5	879,100,000	937,000,000

※ 동별, 층별, 호별 분양가가 상이하오니, 당사 홈페이지(http://www.dmc-skviewipark.co.kr)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일정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후 30일 내	2021.03.10	2021.08.10	2022.01.10	2022.06.10	2022.10.10	2023.02.10
							2023. 07예정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시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39	49	53	59A	59B	76	84A	84B	102	120	합 계
일반 (기관주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3
	장기복무 재대군인	1	1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3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4
	서울특별시		1	1								2
	장애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50%)	3	3	1			1	1				9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 인천(50%)	4	2	1				1				8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75%)	9	7	2	1	1	2	3	1			26
	소득기준 일반공급(25%)	3	3	1				1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2				1				5
합 계		28	22	7	1	1	4	9	1	0	0	73

특별공급 신청자격(공동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기타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보양전환공급대상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주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주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월가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2년 이상(2018.08.03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볼.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 (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단제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급대상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재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시 재 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이 제한됨. (2순위로 청약 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투기 · 청약 과열지구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가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별정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시 가압한 본인의 연락처(주 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시 당첨자는 당사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청약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 위	신청구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85㎡이하	1순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10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 1순위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 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잔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주택형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 ·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2순위 청약불가	

면적별 청약 예치금(특별공급, 일반공급 기준)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전 은행 청약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원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 앱에서 ‘청약Home’ 검색 및 설치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원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현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임대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 · 초본, 혼인